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제도 효과 및 인식 조사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Effects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이 동 욱^{1*} 김 용 탁²

Lee, Dong-Wook^{1*} Kim, Yong-Tak²

*Dept. of Civil Eng.(Marine and Env'tl Research Institute), Jeju Nat'l Univ., Jeju, 690-756, Korea¹
General Administration Dept., Munyeonno 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00, Korea²*

Abstract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s being introduced and operated as a model of advance budget reduction for local fiscal efficiency. But as the authority recognizes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as a means of budget reduction, and companies recognize it as a means of budget curtailment, a contradictory understanding structure on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is being formed. This research was prompted to propose a development method that will enabl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as a mode of advance budget reduction. To achieve this, the operating status of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was analyzed, and the recognition level on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and companies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contract screening data.

Keywords : contract screening system, budget redu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내 지방행정기관 최초로 2003년부터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1].

제도 도입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왔으나, 이 경우 발주부서 직원의 잦은 이동과 여타 업무 겸임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계약담당자 역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전문적으로 보완하고 행정에 비용절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전에 사전계약원가심사 단계

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의 설계 및 산출 등의 착오를 시정함으로써 커다란 예산절감의 효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를 계기로 울산시, 광주시, 경상남도,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6개 광역시/도로 확산되어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계약심사제도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로 인한 사전예산절감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사제도가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측면으로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상반된 구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건설업체 측면을 지자체와 용역업체 측면으로 재조명하여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계약심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10월부터

Received : August 27, 2010

Revision received : September 27, 2010

Accepted : October 4, 2010

* Corresponding author : Lee, Dong-Wook

[Tel: 82-64-754-3458, E-mail: dwlee@jejunu.ac.kr]

©2010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All rights reserved.

2009년 6월까지 추진하였던 계약심사제도의 예산절감 성과를 분석해보고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제주도내 업체(설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사항을 찾아가면서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 1) 문헌조사를 통하여 타 지자체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2) 기존 연구결과 및 타시도의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의 현황(월별 현황, 절감율 등)을 분석하였다.
- 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계약심사제도를 경험한 계약담당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 4)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분석과 계약담당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2. 기존연구의 고찰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금액과 공사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나 적격심사제도, 최고가치 낙찰제도 등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서울시가 2003년부터 기 시행되었던 계약심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Kim[2]은 계약심사제도의 도입과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재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2]은 예산절감의 영역을 불성실, 무능력, 부패의 세 가지 문제로 인식하고, 각 영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계약심사부서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공사나 용역의 중간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성과를 심사하고, 이에 따른 단위 성과건당 돈의 가치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절감이란 성과뿐만 아니라, 발주예산담당자들의 원가계산마인드의 훈련과 교육, 업체들의 입찰과정을 시장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예산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적절한 예산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Ryu[3]는 계약심사제도가 지속적으로 제도적 성과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yu[3]는 정책방향으로 계약심사기능이 감사·재정관실의 회계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상호 분리된 추진상황에 문제점을 찾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할 수 있는 총괄분석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으며 사전적 예산절감 제도인 계약심사제도가 계약체결 뿐만 아닌 계약의 집행, 사후관리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보고 투입 중심 관리에서 벗어난 계약집행과 모니터링 과정까지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3.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및 절차

3.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최근 들어 각종 건설공사 등의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태 불부합 및 과다설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기 위한 것과 계약심사를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재정절약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3.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및 절차

3.2.1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 운영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4]인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가 정책의 적합성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5]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이어야 한다.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①항이나 ③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으로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정 외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세 번째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6].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통합적인 운용을 위한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원칙을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하고 있고,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 건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의 재무회계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2.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절차

계약심사의 주요 기능은 첫째,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둘째,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 운영 셋째, 설계변경내용 및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이다[7].

계약심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① 발주금액 산정(발주품의 입안) → ② 계약발주 부서가 계약심사 의뢰 → ③ 계약심사(원가분석) → ④ 계약심사결과 작성 → 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계약심사 결과 송부 → ⑥ 발주금액

재산정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 ⑦ 계약의뢰 → ⑧ 계약체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계약심사부서는 계약심사 결과를 D/B화하여 관리한다. 위와 같은 계약심사 흐름도에 기초하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등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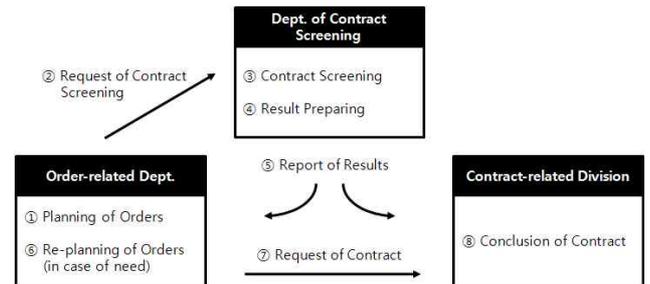


Figure 1. Flow of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Jeju

4. 계약심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인식조사

4.1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8월 13일에 인력배치(정원 6명)가 되어 당해 10월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상기관은 총 89개 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 77개 기관(도, 행정시 및 사업소 등), 공사·출연기관 12개 기관(지방공사, 출연법인, 특별공공법인)을 대상으로 공사 5억(전문 및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추진되어온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분류로 진행되어 2008년도(10~12월) 심사건수 187건과 2009년도(1~6월) 심사건수 348건, 총 535건으로 심사의뢰부서에 따라 도본청, 사업소, 행정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을 살펴보면 심사건수(number of screening)는 차츰 증가추세로 변하다가 2월을 중심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심사 건에 대한 심사금액(amount of screening)을 살펴보면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 때 심사건수는 증가하나 심사금액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2월과 3월에 심사금액이 다른 시기보다 금액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간에 무관하게 예산절감율(reduction ratio)은 5~7%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onditions of contract screening system in Jeju

(Unit : Million Won)

Year	Month	Number of screening	Amount of screening (before)	Amount of screening (after)	Reduction	
					amount	ratio
2008	Oct.	55	25,882	24,506	1,376	5%
	Nov.	66	75,293	69,713	5,579	7%
	Dec.	66	101,655	95,701	5,954	6%
2009	Jan.	75	52,422	49,457	2,965	6%
	Feb.	86	76,395	71,314	5,081	7%
	Mar.	80	123,784	118,597	5,187	4%
	Apr.	49	31,713	30,008	1,705	5%
	May	29	32,428	30,695	1,733	5%
	Jun.	29	51,816	49,001	2,815	5%

Table 2는 2008년 10월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도본청 (provincial government), 사업소(operation division) 및 행정시(city;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시의 비중은 약 535건의 심사 중 242건으로(45% 비중)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시를 대상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난 결과이다.

2008년(10~12월)과 2009년(1~6월)까지의 내용을 보면 행정시나 사업소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도본청에서의 예산절감율이 2008년(10~12월)에서 2009년(1~6월)으로 넘어 오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본청의 주요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공사(마을 조성, 전시관 신축 등)가 2009년(1~6월) 사업내용에서 관련 공사 물품에 대한 단가 형성이 되지 않아 심사내용 중 단가 산출에도 어려움이 있어 그 절감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과에 각 발주기관에서 들어오는 심사건의 심사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건에 대한 심사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공사(construction), 물품(goods) 및 용역(service)을 들 수 있다.

Table 3을 살펴보면 2008년(10~12월)과 2009년(1~6월) 모두 공사와 물품의 심사 건에 대한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절감율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물품부분의 절감율보다 공사부분의 절감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사 건에 대한 심사금액이 물품부문보다 공사부분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며, 높은 심사금액에 대한 심사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절감요인이 물품부문보다는 공사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Screening conditions by ordering division in Jeju

(Unit : Million Won)

Year	Division	Number of screening		Amount of screening (before)		Amount of screening (after)		Reduction amount		Reduction ratio
		No.	Weight	Amount	Weight	Amount	Weight	Amount	Weight	
2008 (Oct.-Dec.)	Provincial government	32	17%	40,006	20%	37,098	20%	2,908	23%	7%
	Operation division	59	32%	40,931	20%	38,889	20%	2,042	16%	5%
	City	91	49%	120,904	60%	112,961	59%	7,943	62%	7%
	Etc.	5	3%	989	0%	972	1%	18	0%	2%
	Total	187	100%	202,830	100%	189,919	100%	12,910	100%	6%
2009 (Jan.-Jun.)	Provincial government	80	23%	83,488	23%	80,927	23%	2,561	13%	3%
	Operation division	85	24%	54,456	15%	52,045	15%	2,411	12%	4%
	City	151	43%	221,382	60%	207,025	59%	14,357	74%	6%
	Etc.	32	9%	9,230	3%	9,075	3%	156	1%	2%
	Total	348	100%	368,557	100%	349,072	100%	19,485	100%	5%
Total	535		571,387		538,991		32,396		6%	

* City : Jeju-si and Seogwipo-si

Table 3. Screening conditions by ordering types in Jeju

(Unit : Million Won)

Year	Type	Number of screening		Amount of screening (before)		Amount of screening (after)		Reduction amount		Reduction ratio
		No.	Weight	Amount	Weight	Amount	Weight	Amount	Weight	
2008 (Oct.-Dec.)	Con. work	8E	45%	161,851	80%	151,771	80%	10,080	78%	6%
	Goods	77	41%	13,186	7%	12,727	7%	458	4%	3%
	Service	13	7%	5,106	3%	4,955	3%	151	1%	3%
	Etc.	12	6%	22,687	11%	20,466	11%	2,221	17%	10%
	Total	187	100%	202,830	100%	189,919	100%	12,909	100%	6%
2009 (Jan.-Jun.)	Con. work	18E	54%	316,427	86%	298,847	86%	17,580	90%	6%
	Goods	124	36%	14,704	4%	14,416	4%	288	1%	2%
	Service	3E	10%	37,427	10%	35,809	10%	1,618	8%	4%
Total	34E	100%	368,557	100%	349,072	100%	19,485	100%	5%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의뢰되는 공사에 대한 심사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금액 삭감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주요한 6가지 요인(제경비;overhead expenses, 품셈;estimating system, 자재;materials, 공법;costruction methods, 물량;quantity, 공종;work types)으로 조사되었다(Figure 2).

공사에 대한 여섯 가지의 절감요인(제경비, 품셈, 자재, 공법, 물량, 공종(공종삭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품셈 부문이 67%, 제경비 부문이 44%, 물량 부문이 41%, 자재 부문이 33%로 분석되었다.

품셈 부문의 내용을 보면, 품셈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의 품셈을 적용한 경우, 토량환산계수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물량 부문의 내용을 보면, 물량을 중복으로 계상되거나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규격변경을 포함하거나 운반거리 및 운행비를 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종의 수량이 중복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맨홀의 토공량과 관로 터파기량이 중복되는 경우와 토공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현장여건에 맞게 장비나 토공량을 재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경비 부문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제경비요율을 적용한 경우이거나 안전관리비의 대상규모에 대해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 오류와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등에 대한 적용 오류를 들 수 있고 또한 이를 누락시켜서 추가 적용된 경우도 포함되었다.

자재 부문의 내용을 보면, 자재단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잘못 계상되거나 기존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해당 자재 단가를 적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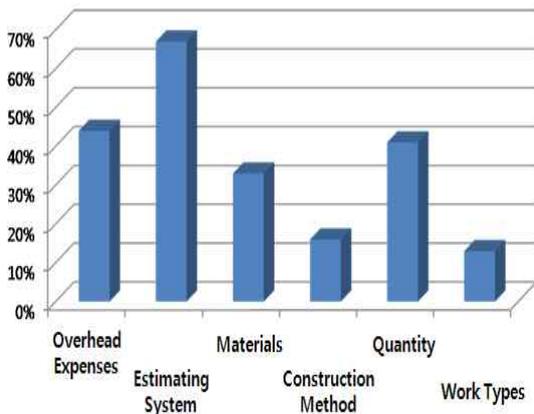


Figure 2. Reduction Factors in Construction Works

4.2 계약심사제도의 인식 조사분석

4.2.1 설문자료 및 분석 방법

공사비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를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과 6명을 표본으로 한정하였고, 참여업체는 용역업체 60 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계약심사과 6명(회수율 100%), 용역업체 50곳(회수율 83.33%)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어 통계프로그램인 Minitab 15와 Microsoft Excel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자료수집은 2009년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 및 타 계약제도분야 연구들의 설문지를 기초로 건설현장과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고, 몇몇 수준평가의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측정 항목 구성을 5점, 7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서로 연관된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질문의 유형으로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은 Table 4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계약심사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과 인식에 대한 내용과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이후의 효과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용역업체는 Table 5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문을 하였고, 그 내용은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공사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내용과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인식 및 수용에 대한 내용,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이후의 효과 및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계약심사에 따른 효과와 인식에 대한 내용을 양측에 중복으로 포함시켜서 서로의 시각을 분석해 보고자 내용을 구성하였다.

Table 4. Survey contents for civil servant in contract screening

Types	Contents	No.
Personal data	gender, age, working period, major, level of education etc.	(1)~(5)
Work conditions	screening number(per monthly), workload, level of difficulty, level of training for screening, work conditions, work capacity of eng. company,	(6)~(16)
Effect and recognition for screening	qualification for related work,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eng. company and ordering organization, improvements for contract screening system	(17)~(21)

Table 5. Survey contents for engineering company

Types	Contents	No.
Personal data	gender, age, belonging dept., position, company type	(1)~(5)
Experiences for contract screening	number of construction work, recognition of contract screening system	(6)~(11)
Recognition and acceptance for reduction	recognition and acceptance for reduction	(12)~(15)
Effect and recognition for screening	work capacity of eng. company, qualification for related work, relationship changes between eng. company and ordering organization, improvements for contract screening system	(16)~(18)

4.2.2 설문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후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과 용역업체의 계약심사제도로 인한 업무능력 변화의 영향 정도,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의 개선된 사항, 계약심사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첫 번째로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월평균 심사건수와 희망 월평균 심사건수,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 업무의 난이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정도 등의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월평균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심사하는 심사건수는 13.5건으로 2일에 약 1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희망하는 월평균 심사건수는 10.67건으로 약 3일에 1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량이 많다고 체감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약심사관련 업무 인력을 증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50% 응답함).

계약심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매우 쉽다, 쉬운 편이다, 적당하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에 각각 가중치(-2, -1, 0, 1, 2)를 부여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0.33의 값이 도출되어 다소 어려운 업무난이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합한 능력으로는 Figure 3과 같이 관련전공학과를 졸업한 자이면서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과 무관하며,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33.3%로 높았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전교육 여부와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에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대부분이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사전교

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고(83.3%),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현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계약심사제도의 관련 범규 및 지침에 대한 확인 및 숙지하고 있다는 답변된 내용이 83.3%로 가장 높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정보공유가 16.7%로 높게 나왔다. 또한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66.7%가 관련 공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공법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답하였고 그 외 답변으로는 작업방법(장비나 작업순서, 인력배치) 정도의 수준까지 고려한다는 것과 지침과 어긋난 서류의 오류 및 오기 정도를 파악한다고 각각 16.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계약심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내용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심사제도를 기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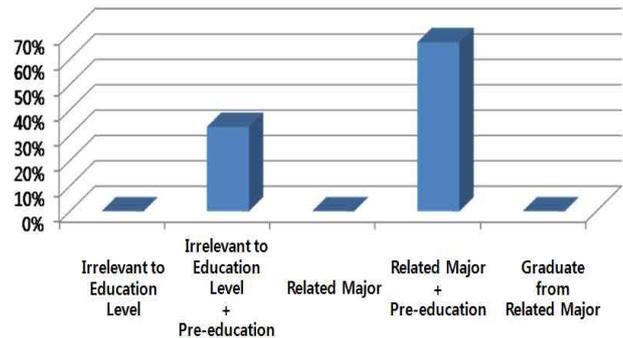


Figure 3. Suitable Capacity for Contract Screening Work in Civil Servant

두 번째로 계약심사제도 적용의 전/후 용역업체의 업무능력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답변은 7점척도(매우낮다, 낮다, 대체로 낮다, 중립, 대체로 높다, 높다, 매우 높다)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3, -2, -1, 0, 1, 2, 3)한 값을 이용하여 설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의 용역업체의 업무능력 점수는 각 척도의 빈도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한 결과 -1.2값이 도출되어 대체로 낮은 성향을 보여 주었고, 제도를 적용한 이후 용역업체의 업무능력 점수는 0.4값이 도출되어 중립에 가깝지만 다소 높아진 성향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용역업체의 능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에 있어 그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용역업체가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자격요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계약심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도 관련분야 경력과 회계/적산이 가능한 사람, 관련분야 자격증(기사)을 취득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용역업체의 개선된 사항과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운영모델로서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측정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가중치(1순위 3점~3순위 1점)를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심사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용역업체의 개선된 사항으로 예산절감측면(budget reduction)을 1순위로 꼽았다. 응답자 전원(계약심사담당공무원 6명)이 예산절감측면을 1순위로 응답함으로써 가중치 점수 18점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기술능력이 향상(improvements of technical skills of compay)되었다는 내용이 가중치 9점으로 나타났다(2순위 4명, 3순위 1명, 1명 미응답). 그리고 업체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competitive strength of company) 되었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6점으로 조사되었다(2순위 1명, 3순위 4명, 1명 미응답)(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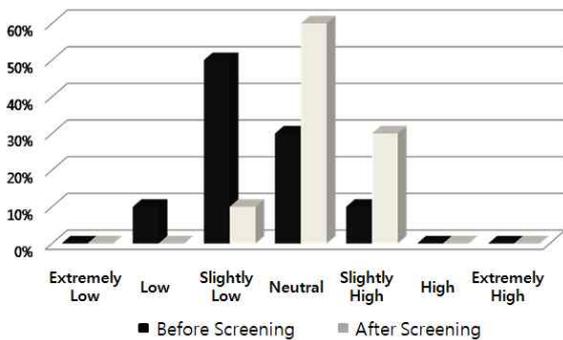


Figure 4. Change of Work Capacity related Contract Screening in Eng. Company (Before and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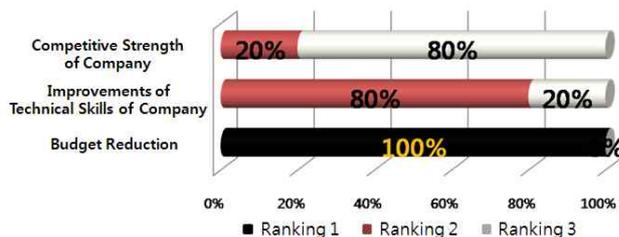


Figure 5. Improvements of Company after Contract Screening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게,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운영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담당공무원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 세 가지 항목이 높게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DB구축과 이를 도내 용역업체에게 배포해야 된다는 내용,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각각 가중치 점수 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밖에도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5점으로 측정되었고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1점으로 조사되었다(Figure 6).

계약심사담당공무원에게,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운영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용역업체 내에 육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14점(1순위 4명, 2순위 1명)으로 가장 높았고, 업체의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8점(1순위 1명, 2순위 2명, 3순위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가중치 점수 6점(2순위 2명, 3순위 2명)으로 조사되었다(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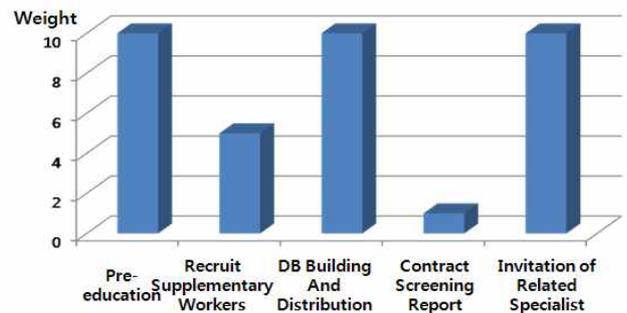


Figure 6. Civil Servant's Improvement Plans in the Civil Servant of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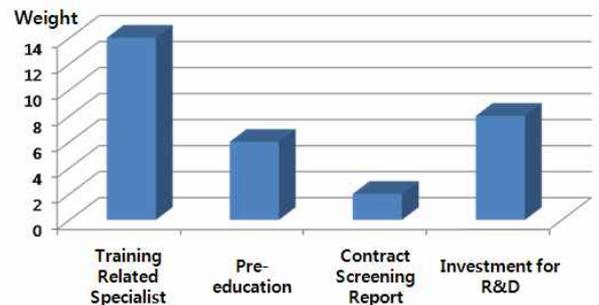


Figure 7. Company's Improvement Plans in the Civil Servant of View

다음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이다.

계약심사가 적용된 공사의 경험 후 용역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인식,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용역업체의 변화, 계약심사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계약심사가 적용된 공사를 경험한 후 용역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심사가 적용된 공사의 시공건수, 계약심사가 적용된 공사를 시공한 뒤 용역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업체에 대한 영향 등의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공사를 경험한 업체의 공사건수는 평균 5.6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적용된 공사를 경험한 후 용역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7점 척도(매우낮다, 낮다, 대체로 낮다, 중립, 대체로 높다, 높다, 매우 높다)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3, -2, -1, 0, 1, 2, 3)하여 분석한 결과 약 0.31의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Figur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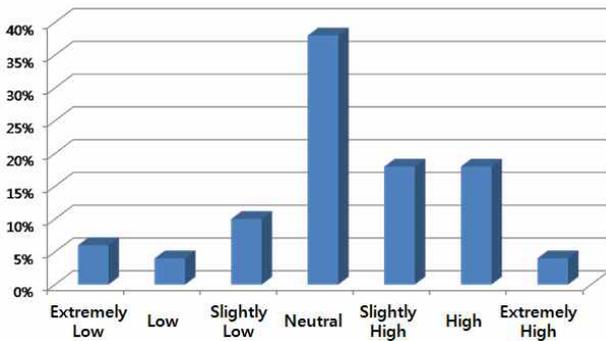


Figure 8. Recognition for Contract Screening System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이후 용역업체에 대한 영향정도를 살펴본 결과 Figure 9와 같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 이후 용역업체의 역량에 긍정적인(향상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80% 응답함). 그 향상된 사항을 살펴보니 공사에 대한 업체의 견적능력향상(45% 응답함)과 기술개발능력향상(39% 응답함)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도 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구도가 활성화(13% 응답함) 되었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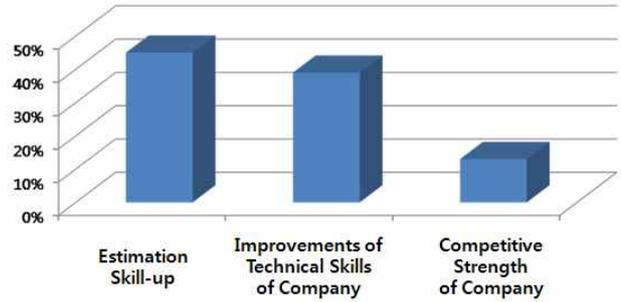


Figure 9. Improved Items of Companies after Contract Screening System

여기서, 직급별(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로 계약심사제도 적용 이후 용역업체에 대한 향상된 사항을 교차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10).

직급이 올라갈수록(사원 ⇒ 임원) 견적능력 향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직급이 내려갈수록(임원 ⇒ 사원) 견적능력 이외의 측면(기술개발능력향상, 업체간 선의의 경쟁구도 활성화)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해당 직급분야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용역업체의 향상된 내용을 응답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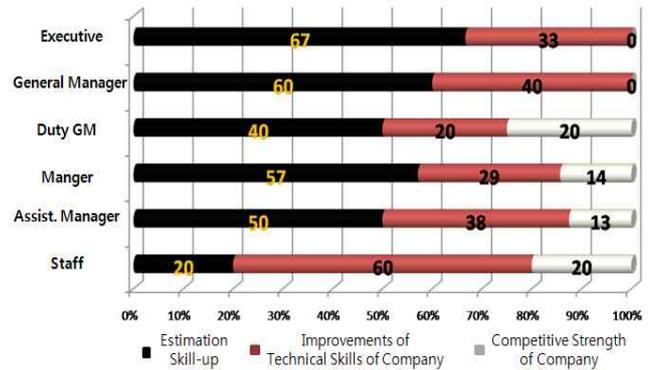


Figure 10. Improved Items by Position

두 번째로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용역업체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심사내용의 인지,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해 도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0% 응답). 이와 반대로 28%의 응답자는 삭감된 공사금액의 심사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업체의 반응은 5점 척도(매우 적정치 않다, 적정치 않은 편이다, 보통, 적정한 편이다, 매우 적정하다)에 각각 가중치(-2, -1, 0, 1, 2)를

부여한 값을 적용하여 설문을 분석한 결과 0.26의 값이 도출되어 다소 적절한 계약심사내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삭감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중립에 가까웠지만(70% 응답), 약 30%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소 적절한 계약심사내용이 도출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직급별(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로 계약심사를 통해 삭감된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11과 같다. 임원으로 즉, 직급이 올라갈수록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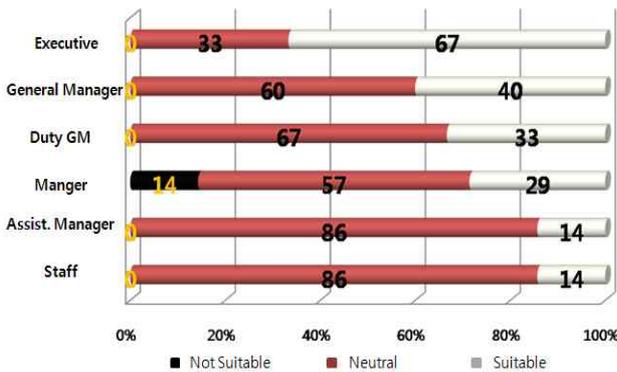


Figure 11. Level of Acceptance for Screening's Results

계약심사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삭감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측정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중치를 3점에서 1점까지 각각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단가산출(unit price)에 대한 내용이 1순위 72%, 2순위 17%, 3순위 11%로 가중치 점수 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량산출(calculation of quantities)과 일위대가(itemized unit cost)에 대한 내용이 가중치 점수 30, 25점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제경비용(overhead expenses), 기타(도면의 현장과 상이함)에 대한 내용이 조사되었다(Figure 12).

그리고 이렇게 심사내용의 부적절하다는 결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0% 응답함). 그 밖에도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14% 응답함)과 업체 측이 지침과 어긋난 서류에 대한 오류와 오기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3% 응답함)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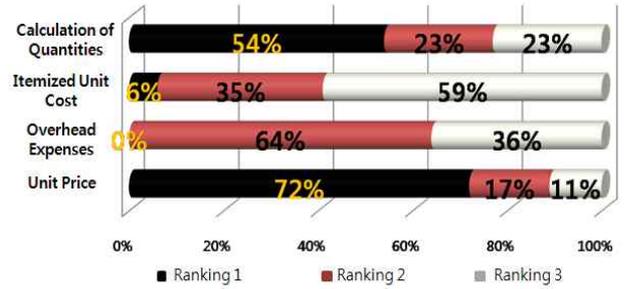


Figure 12. Non-Suitable Items for Reduction

용역업체 내에서 생각하는 계약심사 업무능력 수준의 변화를 각 직급별(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7점 척도(매우 낮다, 낮다, 대체로 낮다, 중립, 대체로 높다, 높다, 매우 높다)를 이용하여 분석된 값에 가중치(-3, -2, -1, 0, 1, 2, 3)를 각각 부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Figure 13 및 1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전·후에 대한 직급별로 측정된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수치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대리의 가중치 값이 -0.50에서 1.00으로 1.5의 값이 상승하여 타 직급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았고 과장이 0.87값 상승으로 높았으며, 임원이 0.80값 상승, 차장이 0.78값 상승, 사원이 0.70값 상승, 부장 0.17값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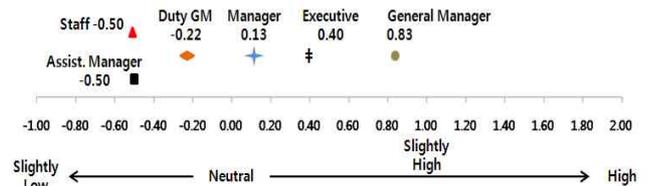


Figure 13. Level of Work Capacity by Position before Scre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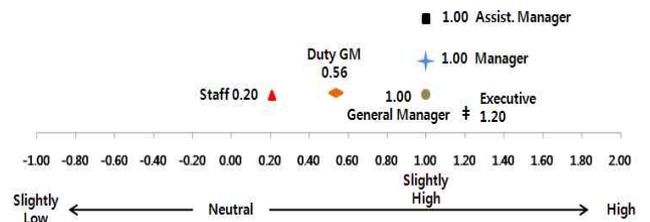


Figure 14. Level of Work Capacity by Position after Screening

다음으로 용역업체가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경험한 뒤 계약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의 가까운 응답자가 계약심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관련분야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과 관련분야 경력에 상관없이 회계·적산이 가능한 사람, 설계 견적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용역업체 설문응답자에게,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운영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담당공무원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 네 가지 항목이 높게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DB구축과 이를 도내 업체에게 배포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점수 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이 가중치점수 66점,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52점,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각각 가중치점수 47점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18점, 기타의견으로 공사비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등이 가중치점수 3점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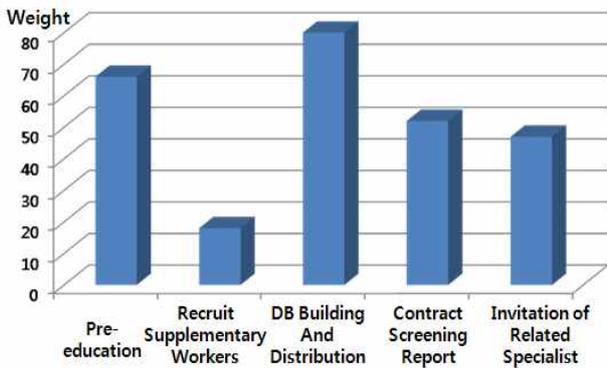


Figure 15. Civil Servant's Improvement Plans in the Company of View

또한 용역업체 설문응답자에게,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운영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용역업체 내에 육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중치 점수 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용역업체의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1순위 20%, 2순위 40%, 3순위 20%로 가중치 점수 8점으로 높았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사전교육과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보고서가 가중치점수 77, 73점으로 높았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의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중치점수 31점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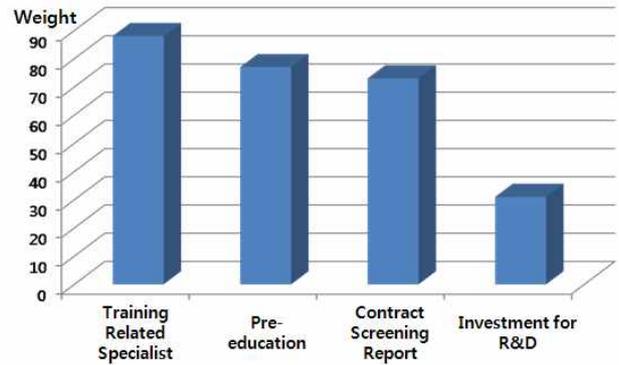


Figure 16. Company's Improvement Plans in the Company of View

4.3 계약심사제도의 개선 방안

4.3.1 기술적 개선방안

앞에서 설문분석 결과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기술적 방향으로 첫 번째로,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도내 용역업체에게 배포해야 한다. DB를 구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견적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의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6 및 15).

두 번째로, 용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중에서도 계약심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사전교육을 언급하였고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에서도 50%이상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Figure 7 및 16).

4.3.2 정책적 개선방안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첫 번째로, 계약심사과 내의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중 현재 심사업무량에 대한 조사결과 2일에 1건 수행하는 업무량을 3일에 1건으로 축소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인력증원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이상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약심사과의 인력을 증강 시켜야 한다.

또한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용역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업체 내에 육성하여야 한다. 업체 내에 계약심사제도와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업체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의 교류를 통해 용역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인식차이에 대한 문제점이다.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은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66.7%가 관련 공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공법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고 조사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용역업체측면에서는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20% 응답함)하여 부적정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Figure 17 및 18과 같이 용역업체의 계약심사 업무 능력 수준에 대해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스스로가 수준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약심사제도의 적용 전/후의 변화차이는 비슷하나 업무능력 자체의 수준이 업체보다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평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용역업체의 계약심사 업무능력 수준을 놓고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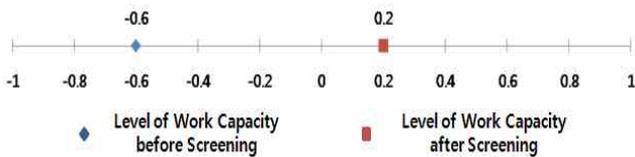


Figure 17. Company's Capacity Change in Civil Servant of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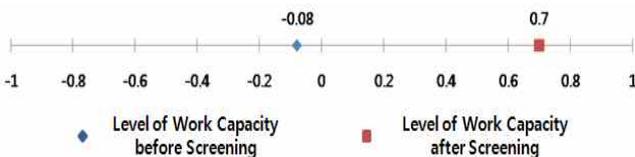


Figure 18. Company's Capacity Change in Company of View

이렇게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상호간의 인식 차이,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적인 방향에서 언급된 계약심사담당공무원측에서 용역업체 측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만의 목적이 아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인식하여 좀 더 폭넓게 의미를 갖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제주도내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효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계약심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정착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내 용역업체의 견적능력향상과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도내 용역업체에게 배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 용역업체 상호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결부시켜 폭 넓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인력 보강과 계약심사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제도와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업체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심사담당공무원과의 교류를 통해 업체의 경쟁력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계약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연구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역적인 특수성과 계약심사제도 관련 체계적인 DB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계약심사제도의 영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전예산절감 모델로 계약심사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처에게는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으로, 업체에게는 예

산삭감이라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상반된 이해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예산절감 모델로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자료를 기초로 계약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과 지자체와 업체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 계약심사제도, 예산절감

References

1. Park JH. The contract screening in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Korea Local-government Management Institute; 2008.
2. Kim CD. A study on Seoul administration-finance improvement and management mind introduction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and result of contract screening systems.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4.
3. Ryu CH. A study on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KLOG Winter Confer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KLOG) 2009:2-3.
4. Local finance act. Article 3; No. 9926.
5. Enforcement decree on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 No. 9685
6. Enforcement decree on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44; No. 21801
7.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business processing guidelines for contract screening in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velopment Financial Corporations; 2008.